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

김 흥 규\*

## Ⅰ 요약

이 논문에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산정에 대한 문제점(자산건전성의 정확한 분류에 관한 어려움, 애매모호한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에 대한 근거)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신뢰할 수 있는 대출평가시스템,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조기경보 시스템, 과거실적을 고려한 대손의 예측, 의사결정과정의 문서화, 신용등급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견제와 균형에 따른 의사결정, 그리고 분별 있는 이사회)를 제시한다.

핵심주제어 :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 I. 서 론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영업환경 하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리라 예상되는 손실액을 대출금리 산정 시 반영함과 동시에 기대손실액만큼을 현재의 수익에서 유보시켜 두어 자산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손실에 대비한 비축자금, 즉 대손충당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를 위해 당기의 수익에서 유보되어야 할 대손충당금의 적정수준을 산정하는 것은 미래에 실현될 손실이 불확실한 이유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는 금융감독당국의 주관 하에 금융기관들은 대출채권을 건전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대출채권 유형별로 일정 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최근에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카드 등 다수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확대했다가 부실화가 진전됐다는 판단에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heungkyu@dankook.ac.kr

따라 이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하거나 인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별로 합당한 대손충당금 설정과정의 확립·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원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한 절차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신용위험 관리 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 II. 대손충당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 대손충당금 적립의 필요성

대손충당금이란 통상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출금 가운데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sup>1)</sup>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은 계약조건에 따라 완전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적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적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의 정확한 규모와 당기 수익에서 유보되어야 할 대손충당금의 적정수준을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옳친 데 덮친 격으로 일반적으로 대손적립금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 일례로 1980년대 미국금융기관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순이익의 50%에 달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어 1992년의 경우 시중은행의 영업이익 대비 대손적립금 비율이 33.5%에 육박했다. 이러한 규모를 고려할 때 대출금리 결정의 정확성과 금융기관 수익에 대한 정보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대손충당금의 수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손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손관리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

1) 대손충당금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부실대출의 발생과 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경영의사결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즉 금융당국의 지시에 의한 타율적인 적립관행이 정착됨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및 이에 대한 금리결정에서의 중요성 등에 관련된 제반 문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이후 전개된 금리자유화를 주축으로 한 금융자유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으로서의 대손충당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 절감 관점에서 고려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신용위험 노출도보다 높게 적립하게 하는 유인을 가져왔다. 그러나 1986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실제로 상각되는 부분만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절세목적의 아닌 경제적 의미에서 미래 대손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제3세계에 대한 부실대출 회수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적정수준의 예상치 보다 많은 적립금을 산정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강경한 협상태도를 전달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거품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경험함에 따라 적절한 대손충당금의 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 2. 대손충당금 제도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행법 제34조에 대손충당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은 특정자산<sup>2)</sup>에 대해 설정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부실대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손적립금 유보기준을 살펴보면 1991년까지는 은행감독원의 지도에 의거해 자산의 분류에 따라 적립금의 규모를 차등 적용하지 않고 기준계정의 일정률을

2) 특정자산이란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자산,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한 자산) 중 대출채권을 의미하여, 이에는 원화 및 외화 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매입외환, 기타 채권 등이 속한다.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건전성의 정도에 따라 적립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일종의 ‘위험연동체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정도에 따라 적립금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1993년 적립금기준을 보면 설정대상 채권의 2%, 1992년 말 부실채권잔액의 10%,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 증가액의 10%, 회수이문 분류 증가분의 50%, 추정손실 분류 증가분의 100%의 합계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다.

법인세측면에서는 198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대손충당금 손금처리 기준이 바뀌었다. 즉 1986년 이전에는 모든 법인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손금인정 한도가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로 제한되었으나, 이후에는 영업상 부실채권의 발생이 당연히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대상 채권가액의 2%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연도에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손이 발생한 경우 우선 설정된 충당금에서 상계를 한 후, 부족 시에는 직접상각이 가능하며 상각액은 5년 동안 이연해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에 대한 손실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다음의 <표 1>의 ①, ②, ③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된다.<sup>3)</sup>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제13호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 및 대손처리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자의 판단 하에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손금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상각처리의사와는 무관하게 금융감독원의 임점검사 시 대손상각토록 요구하는 채권의 경우 손금을 인정한다.

<표 1> 대손충당금의 산정

① 채권잔액 × 2%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②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③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5단계 분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최저적립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3)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③ 방식에 의한 금액이 ① 또는 ② 방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③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세법상 손금인정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금융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한다. 즉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표 2>와 같이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표 2> 연체기간 및 부도에 따른 자산건전성 5단계 분류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연체기간	01월 미만	01월 이상 03월 미만	03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03월 이상 12월 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12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부도 등	-	-	최종부도, 청산· 파산절차 진행, 폐업시의 회수 예상가액	-	최종부도, 청산·파산절차 진행, 폐업시의 회수 예상가액 초과분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대출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단계별로 최저적립비율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의 경우 0.5% 이상을, '요주의'의 경우 2% 이상을, '고정'의 경우 20% 이상을, '회수의문'의 경우 50% 이상을, 그리고 '추정손실'의 경우 100%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 3. 대손충당금 제도의 문제점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는 다섯 단계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산건전성 분류자체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한 기업이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같은 여신인데 A은행에서 분류하는 것과 B은행에서 분류하는 것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은행간의 일관성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선진국 금융기관에 비해 심사분석을 위한 금융기관의 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분류가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 즉 선진금융기관에 비해 심사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 및 인력, 기술,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차입자의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있는 자산건전성 단계별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설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이 비율에 근거하여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기관별로 여신의 특성이 다르며 경제환경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 달라짐으로써 대출자산을 자신들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적립비율의 제시는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에 혼선을 가져다 줄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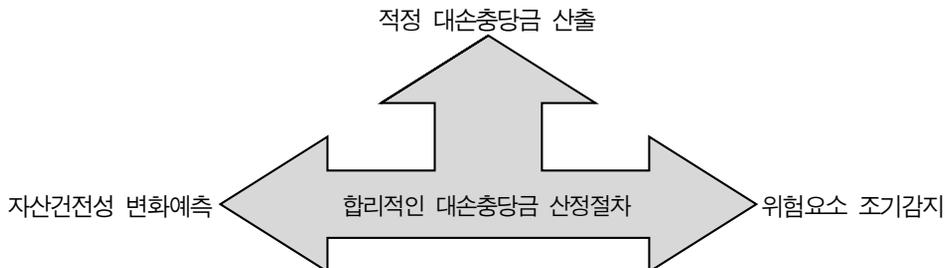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재 지역별·분야별로 세분화해 가는 금융기관을 똑 같은 기준을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개별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 및 이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 Ⅲ.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

#### 1. 대손충당금 산정에 따른 효과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결정하는 일은 최근까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금융기관이 경험한 최근의 엄청난 대손과 더불어 정부당국과 시장참여자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점점 변화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은 수익을 오보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의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림 1]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로 인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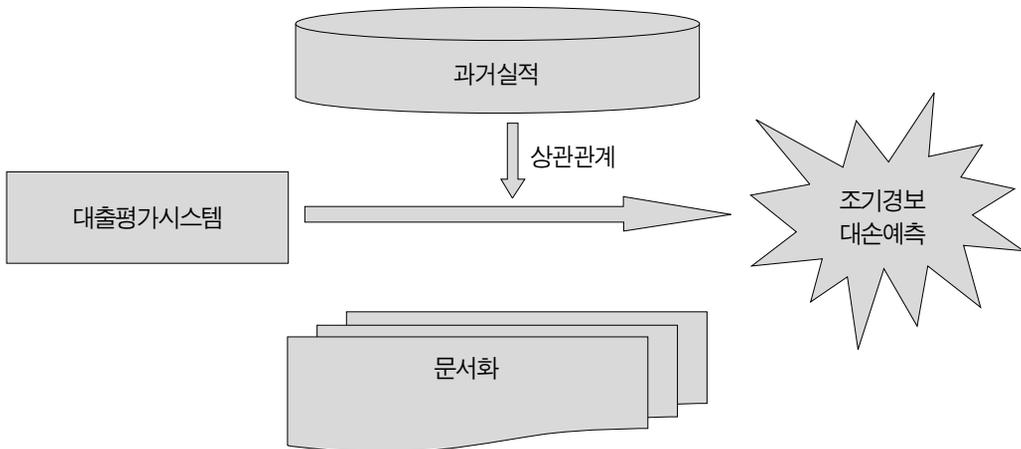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은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수립되면 경영층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결정, 경제적인 충격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변화 예측, 그리고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신용위험을 야기하는 요소들의 감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

금융기관에서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구하는 절차는 금융기관의 크기, 구조, 신용문화, 대출포트폴리오의 구성, 그리고 최고경영층의 대출경험과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대손충당금을 구하는 절차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대출평가시스템’,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조기경보시스템’, ‘과거실적을 고려한 대손의 예측’, ‘의사결정의 문서화’, ‘신용등급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건제와 균형에 따른 의사결정’, 그리고 ‘분별 있는 이사회’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



대출평가시스템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시기적절하고 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과거 및 현재의 영업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대출을 하던 관행을 버리고 고객의 미래가치 및 부채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출평가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출평가시스템은 대손충당금 산정에 근간을 형성하므로 정확한 대손충당금 산정에 필수적인 요

소이다. 금융기관의 대출평가시스템은 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출을 신용위험별로 적어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평가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차주의 신용위험등급은 일관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하고 차주의 지불능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주의 신용위험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차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신용위험등급을 결정하는 대출평가시스템은 차주의 지불능력이 악화될 경우, 이를 조기에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도 겸비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적어도 연체율의 변화, 대출포트폴리오에서의 신용등급 믹스의 변화, 차주들의 신용등급의 변화, 그리고 신용등급의 상향 혹은 하향추세를 추적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과거 대출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여 향후 대손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언더라이팅 기준,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을 갖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자산건전성별 대손충당금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과거 대손실적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손을 예측할 때 단지 과거 대손의 평균뿐만 아니라 과거 대손의 추세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라 대손의 분포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을 결정하는 각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의사결정의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 숫자가 유도되었는지를 명시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은 어렵다. 경영자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이 문서화됨에 따라 향후 의사결정에서 유연성을 잃게 될까 두려워 문서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서화는 제3자 검토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 시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방어할 수 있고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문서화는 다음 기의 대손충당금 설정 시 참조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sup>4)</sup>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할 때 개별대출의 신용등급만을 절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동시에 신용등급간의 상관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차주는 지불능력에 따라 개별 신용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그들의 지불능력은 신용등급간에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sup>5)</sup> 따라서 대손충당금 산정 시에는 경제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출포트폴리오의

4)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는 특히 중요하게 된다.

5) IMF 구제금융과 같은 경제적인 충격에 의해 모든 차주가 영향을 받는다.

동태적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한 부서만이 아닌 관련 있는 다른 부서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은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각각의 의사결정이 검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심사자의 신용등급 결정은 신용검토부서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대손충당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가정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를 승인하는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작용하므로 대손충당금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문서화로부터 이사회는 대손충당금 산정에 수반된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표 3〉 적절한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요소

구 분	내 용
대출평가시스템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시기적절하고, 일관적으로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차주의 지불능력이 악화될 경우 이를 조기에 판단
대손예측	과거 대출에 따른 손실을 고려, 향후 대손을 예측
문서	대손충당금 산정에 수반된 과정과 결과의 문서화
상관관계	시나리오별 신용등급간의 상관관계를 고려, 대손충당금 산출
의사결정	연관부서의 견제와 균형에 따른 의사결정
이사회	대손충당금 산정 과정 검토, 분석, 최종승인

현재의 금융감독원의 지도 하에서는,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절차에 따라 신용등급별로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금융감독원의 최저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감독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한 절차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자산건전성의 정확한 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에 대한 근거가 애매모호하여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에 혼선을 가져다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대출평가시스템',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조기경보시스템', '과거실적을 고려한 대손예측',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문서화', '신용등급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건제와 균형에 따른 의사결정', 그리고 '분별 있는 이사회'를 갖춘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을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기 보다는, 개별 금융기관의 대손실적과 대손충당금 산정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대식, “은행의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 산정”, 재무연구, 1994.
- 손상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9.
- Phillips, L. J., Lierley, D. G., “Allowance for Loan Losses Guidance: Where We Stand Today”, Commercial Lending Review, 2001-2002.
- Spinard, W. F., “Seven Steps to Better Loss Reserves”, ABA Banking Journal, 1992.

## Determining Allowance for Loan Lo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Kim, Heung-Kyu\*

### ABSTRACT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in financial institutions' determining allowance for loan loss controll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e., the difficulty in accurate asset quality assessment and the ambiguity on the accumulation rate corresponding to each asset quality category, are pinpointed and then several elements for appropriate procedure for determining allowance for loan loss, i.e., reliable loan assessment system, practical and comprehensive early warning system, prediction of loan loss based on previous performance, documentation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decision making based on check and balance, ability to evaluate correlations among the asset quality categories, and sensible board of directors, are suggested.

**Key Words** : Financial Institution, Asset Quality, Allowance for Loan Loss

---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